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9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 강훈식 · 김두관 · 김원이

김윤덕 • 김종민 • 김홍걸

문진석 · 신동근 · 양경숙

양정숙 • 이광재 • 이용빈

이장섭 · 정춘숙 · 정태호

홍정민 의워(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뉴딜 관련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크게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 기술 보급과 관련된 스마트화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에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 화된 장비의 교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값비싼 제조장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기술명맥을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법률 제 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가"를 "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 을 "정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의"를 "정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u>국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u>정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국가는</u> 도시형소공인	책무) ① <u>정부는</u>
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u>국가의</u> 시	② <u>정부의</u>
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
	<u>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u>
	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획의 수립) ① (생 략)	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
선) ①・② (생 략)	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
	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
	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
	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
	업장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⑥</u> (현행 제3항과 같음)